세종 리더스포레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HC3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나릿재마을 1단지)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12.06.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라한다)은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소득세법」제104조의2에 따른 투기지구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 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6.12.06.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됩니다. ■ 본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시설 내 부서의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시설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불이익 (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공표 등)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개산하여 분양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공급하며 주택형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청약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순위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전에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에 의거 해당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및 인접한 지역 중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삭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개약 체결일부터 60일이내(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ejongloret.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되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고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여 선정하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청약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하여 둘다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입주자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 ·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신혼부부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확인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서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반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는 당첨 주택형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 간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제1호 제8호 및 「주택법」제63조 제1항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의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 · 경기도과천시 · 성남시 · 광명시 · 전역 / 하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화성시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부산기장군(고리원자력발전소 예정지역) · 대구시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수영구 · 북산진구 – 전역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분당구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대구시 수성구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사이트(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경과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에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의 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모두 재당첨제한 규정에 따라 부적격당첨자로 처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재혼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기재되어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분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함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49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 (이전기관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포함)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 아닌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충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공환분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에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가준)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입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로(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선매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주시 대금납입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입금액에 대하여 할인율(공급계약서 첨조)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 내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구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 잔금은 입주지정증 발급일자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 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 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협약은행과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행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구분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고시)		
	3인이하	4인	5인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4,884,448원이하	5,630,275원 이하	5,630,275원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861,338원이하	6,756,330원 이하	6,756,330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6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630,275원) + [1인당 평균소득(372,914원) * N – 5] (N은인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생년월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하여 둘다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여 선정하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개약 체결일부터 60일이내(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ejongloret.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고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여 선정하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청약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하여 둘다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입주자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 ·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신혼부부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확인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서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반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는 당첨 주택형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 간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제1호 제8호 및 「주택법」제63조 제1항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의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 · 경기도과천시 · 성남시 · 광명시 · 전역 / 하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화성시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부산기장군(고리원자력발전소 예정지역) · 대구시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수영구 · 북산진구 – 전역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분당구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대구시 수성구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사이트(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경과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에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의 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모두 재당첨제한 규정에 따라 부적격당첨자로 처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함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49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의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 · 경기도과천시 · 성남시 · 광명시 · 전역 / 하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화성시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부산기장군(고리원자력발전소 예정지역) · 대구시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수영구 · 북산진구 – 전역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분당구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대구시 수성구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사이트(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경과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에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의 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모두 재당제한 규정에 따라 부적격당첨자로 처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함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49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의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분당구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창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배우자 포함)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배우자, 본인 서명 • 본인명의신사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로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관계확인서류 추가구비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서에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사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Ⅴ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등	• 일시 : 2017.12.12.(화), 14:00 • 확인방법 :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www.housing.or.kr)	• 일시: 2017.12.21.(목)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사 홈페이지 개별조회 (www.sejongforet.com)	• 일시 – 2018.01.03.(수)~2018.01.05.(금)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일원)
	기타 (기관추천)	• 일시 : 2017.12.13.(수), 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 게재 ※ 경쟁에 의한 추첨은 특별공급 접수일 당일 진행함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1순위	• 일시 : 2017.12.21.(목)		
	2순위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신청순위 등 적격자(청약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학교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수와 미계약 동 · 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판단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동 사항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는 동 · 호수 배정 추첨전에 계약할 주택을 선택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를 배정받은 경우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를 배정받은 주택의 당첨자로 인정되며, 기 당첨된 주택의 당첨사실은 무효처리함)

■ 인터넷 당첨자 발표 서비스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 장소 등에서 제확인하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이용기간	2017.12.21 ~ 2017.12.30 (당첨자 발표 일로부터 10일간)	
인 터 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 조회
전화(ARS)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사비스코드 : 9→1→3)	금융결제원의 ARS 주택당첨조회서비스는 2017년 06월 15일부터 종료되었습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7.12.21.(목) 당첨자 발표일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발표 서비스 제공)

※ 전화(ARS)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제확인하셔야 함.

Ⅵ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 · 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8.01.03(수) ~ 2018.01.05.(금) 3일간, 10:00 ~ 16:00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세종 리더스포레 견본주택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	계 약 시 구 비 사 항
본인 계약시	O		– 계약금 입금 영수증 (당첨자 본인 명의)
	O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서명인증서 1부(외국인에 한함)]
	O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사항)
	O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O		– 주민등록표등본 1통
	O		– 주민등록초본(1년 이상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 ·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O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O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직계존 · 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기간확인서 1부 [10년 이상 청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가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세종특별자치시 가주자로 신청시)
	O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O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이전기관	O		–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동 · 호수 발표일 이후 특별공급대상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한함) ※ 기관의 관인 날인된 서류에 한함
최하층 우선배정	O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만65세이상인자 또는 세대구성원은 상기 공통 서류중 신분확인서류로 갈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O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O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및 인감도장,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는 동 · 호수 발표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가 신청 시,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을 제출하시기 바람.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됨.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지역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에 취소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여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향후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 낙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를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 이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제시정한 기정제 적습기간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공급 순서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정제 정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청약기첨항목(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1순위 청약자격 제한대상,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예외 사항은 제외)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되면 공급자격을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지급이 정지되고, 마닙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주도급 대출은 총 공급금액의 40%이며 중도금대출 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대납하며, 입주시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잔금을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함.
• 주도급 대출이자 대납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 개시일 전일까지이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중도금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해당 대출은행에 납부하여야함.
• 주도급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지급 금융기관은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자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청약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며 제대금융 선택은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제대금융 이외의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총 공급금액의 60%이며 중도금대출 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대납하며, 입주시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잔금을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함.
• 중도금 대출은 총 공급금액의 60%이며 중도금대출 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대납하며, 입주시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잔금을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함.
• 사업주체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조약대상보대출의 제한 등)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이러한 제반여건에 불구하고 중도금대출 이자 납부하지 않고 잔금 납부하여 입주하는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서에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제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사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제외동포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Ⅴ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 · 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등	• 일시 : 2017.12.12.(화), 14:00 • 확인방법 :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www.housing.or.kr)	• 일시: 2017.12.21.(목)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사 홈페이지 개별조회 (www.sejongforet.com)	• 일시 – 2018.01.03.(수)~2018.01.05.(금)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일원)
	기타 (기관추천)	• 일시 : 2017.12.13.(수), 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 게재 ※ 경쟁에 의한 추첨은 특별공급 접수일 당일 진행함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1순위	• 일시 : 2017.12.21.(목)		
	2순위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신청순위 등 적격자(청약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학교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수와 미계약 동 · 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판단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동 사항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는 동 · 호수 배정 추첨전에 계약할 주택을 선택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를 배정받은 경우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를 배정받은 주택의 당첨자로 인정되며, 기 당첨된 주택의 당첨사실은 무효처리함)

■ 인터넷 당첨자 발표 서비스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 장소 등에서 제확인하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이용기간	2017.12.21 ~ 2017.12.30 (당첨자 발표 일로부터 10일간)	
인 터 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 조회
전화(ARS)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사비스코드 : 9→1→3)	금융결제원의 ARS 주택당첨조회서비스는 2017년 06월 15일부터 종료되었습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7.12.21.(목) 당첨자 발표일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발표 서비스 제공)

※ 전화(ARS)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제확인하셔야 함.

Ⅵ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 · 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8.01.03(수) ~ 2018.01.05.(금) 3일간, 10:00 ~ 16:00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세종 리더스포레 견본주택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	계 약 시 구 비 사 항
본인 계약시	O		– 계약금 입금 영수증 (당첨자 본인 명의)
	O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서명인증서 1부(외국인에 한함)]
	O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사항)
	O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O		– 주민등록표등본 1통
	O		– 주민등록초본(1년 이상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 ·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O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O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직계존 · 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기간확인서 1부 [10년 이상 청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가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세종특별자치시 가주자로 신청시)
	O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O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이전기관	O		–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동 · 호수 발표일 이후 특별공급대상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한함) ※ 기관의 관인 날인된 서류에 한함
최하층 우선배정	O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만65세이상인자 또는 세대구성원은 상기 공통 서류중 신분확인서류로 갈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O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O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및 인감도장,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는 동 · 호수 발표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가 신청 시,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을 제출하시기 바람.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됨.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지역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에 취소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여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향후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 낙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를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 이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제시정한 기정제 적습기간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공급 순서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정제 정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청약기첨항목(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1순위 청약자격 제한대상,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예외 사항은 제외)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되면 공급자격을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지급이 정지되고, 마닙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총 공급금액의 60%이며 중도금대출 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대납하며, 입주시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잔금을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함.
• 중도금 대출은 총 공급금액의 60%이며 중도금대출 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대납하며, 입주시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잔금을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함.
• 사업주체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조약대상보대출의 제한 등)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이러한 제반여건에 불구하고 중도금대출 이자 납부하지 않고 잔금 납부하여 입주하는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서에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제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사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제외동포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Ⅴ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 · 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등	• 일시 : 2017.12.12.(화), 14:00 • 확인방법 :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www.housing.or.kr)	• 일시: 2017.12.21.(목)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사 홈페이지 개별조회 (www.sejongforet.com)	• 일시 – 2018.01.03.(수)~2018.01.05.(금)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일원)
	기타 (기관추천)	• 일시 : 2017.12.13.(수), 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 게재 ※ 경쟁에 의한 추첨은 특별공급 접수일 당일 진행함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1순위	• 일시 : 2017.12.21.(목)		
	2순위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신청순위 등 적격자(청약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학교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수와 미계약 동 · 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판단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동 사항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는 동 · 호수 배정 추첨전에 계약할 주택을 선택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를 배정받은 경우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를 배정받은 주택의 당첨자로 인정되며, 기 당첨된 주택의 당첨사실은 무효처리함)

■ 인터넷 당첨자 발표 서비스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 장소 등에서 제확인하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이용기간	2017.12.21 ~ 2017.12.30 (당첨자 발표 일로부터 10일간)	
인 터 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 조회
전화(ARS)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사비스코드 : 9→1→3)	금융결제원의 ARS 주택당첨조회서비스는 2017년 06월 15일부터 종료되었습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7.12.21.(목) 당첨자 발표일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민은행에서